

〈자료소개〉 朝鮮後期 濟州地方의 節目類

—〈減柴節目〉과 〈大靜旌義各浦水稅蠶革罷節目〉—

고창석*

〈차례〉

- I. 머리말
- II. 자료의 정리
- III. 자료의 분석
- IV. 마무리

I. 머리말

節目은 어떠한 규정의 시행 세칙이다. 절목에는 중앙 정부에서 발급하는 것과 지방 관아에서 발급하는 것, 그리고 宮房에서 寺刹에 발급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지방 관아에서 발급하는 경우는 그 관할 구역 내의 弊癘을 바로잡기 위한 掇弊節目과 백성들의 徭役을 감면해 주기 위한 蠲減節目으로 구별된다.¹⁾ 오늘날 제주지방에는 牧使(兼防禦使)가 발급한 것과 旌義·大靜 두 縣監이 발급한 절목이 전해오고 있다. 이러한 절목들은 그 내용이 대체로 前言과 節目(細則)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전언만 있는 것도 있고, 부록이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그

*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1) 和田一郎, 《朝鮮土地稅制度調査報告書》, 朝鮮總督府, 1967 復刻板, pp.245-246.

분량은 얼마 되지 않는다.

여기에 소개하는 2건의 절목도 예외는 아니다. 표지에는 오른쪽에서 부터 ① 발급지의 本郷, ② 발급지, ③ 발급인월일, ④ 절목명칭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 또 발급자의 본향과 발급자의 하단 쪽에는 발급 받은 ⑤ 마을 이름이 적혀 있다. 예를 들면, 《감시절목》(필사본, 7장 14면, 규격 22.5cm×26cm)의 경우 ① 尾洞, ② 沈等, ③ 道光六年九月日, ④ 減柴節目의 순으로 기록되었고, 하단에는 水山里(제주시)라 하였다. 官印(7cm×7cm)은 15곳에 날인되어 있다. 《대정정의각포수세곽혁파절목》(필사본, 7장 14면, 규격 24cm×31.5cm)도 ① 沈橋, ② 具等, ③ 庚子八月日, ④ 大靜旌義各浦水稅舊革罷節目의 순으로 기록되었고, 하단에는 大浦里(서귀포시)라 하였다. 관인은 19곳에 날인되어 있다. 특히 발급자는 沈等·具等으로 표기하였는데, 이 때 等은 '임기 내'를 뜻한다. 따라서 沈英錫 목사와 具載龍 목사가 임기 중에 발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발급 시기는 전자가 도광 6년 즉, 순조 26년(1826, 丙戌) 9월이고, 후자가 庚子 즉, 헌종 6년(1840) 8월이다. 또 전자가 제주목 관내를 대상으로 한 데 비하여 후자는 대정현과 정의현 관내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의 두 건의 자료를 正書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II. 자료의 정리

1. 《減柴節目》

葭鶯之後 槩見民情 土地斥鹵 生涯冷薄 又重之以烟役最苦 一男丁元身役之外 青草燒木之兩役 逐年兼責 乃是陸邑所未有之弊也 且聞城外遠村 則稱以防納 徵布徵穀 必倍本而後已 言念民憂 寧不矜惻 此

等弊源 既聞之後 不可置而勿論 故一依內地營邑例 官用燒木 則成置本米 出付該吏 使之貿用 民納燒木 則並從都數 永爲蕩減 以除民弊 而至於青草 此是進上馬牛喂養之物 則左較右量 誠難變通 故仍舊置之 只論燒木 今秋新捧爲始 永勿來納之意 茲成節目 而邑三里及健入別刀朝天等六里 前已減木 金寧一里 亦爲減草云 今此減柴 雖不當一體舉論 其在一視之下 亦豈無向隅之嘆哉 邑三里健入等四里 則城廓修補 不啻責民之多 既不納木 又不納鷄 故大同所納 眞荏特許永減 別刀朝天兩里 則貢船出入 既多侵民之役 而迎新送舊之時 所用饌鷄 亦責民家 則戶鷄減給 亦歸空文 邑三里一體 永減眞荏 金寧一村 則烟戶所納鷄與卵 亦爲特減後 册行條件 及各洞里應納 炭與草減給 鷄與荏 列錄于左 依此永久遵行者

丙戌九月 日

使(押)

一 州四面七十六洞里 蕩減燒木 合爲五千五百十丹 此是營本府排用之物 故以營平役庫成置本米 官用燒木 則次知戶長持本米 以爲貿納而用之 所餘則依詳定作錢以納是齊

一 燒木每丹 作錢詳定 爲一錢二分 則論其價米 爲六升也 以木捧上之際 戶長與庫子 不無霑溉之利 而今既減木 使之貿用 則於斯之間徒增勞苦 亦有難支之慮 故燒木每丹 價以小米八升 優數折定 六升則屬之元價 二升則付之戶長 參其例用之多寡 與其庫子分用是齊

· 營本府官用燒木 則戶長擔當貿納 各處例下 則皆以本米 燒木每丹 小米六升式 戶長次知 上下是齊

一 燒木每丹 本米八升內 除出二升 以爲戶長與庫子之例用 而并其數 合爲七十三石七斗是置 十三石七斗 則付之庫子 六十石屬之戶長 以爲一分霑溉之資是齊

一 該監例用燒木 統一年爲六十丹 而價小米爲二石六斗是置 排以朔數 夏秋分半 取用是齊

一 萬戶所用青草燒木 捧用於該鎮防卒等處 則獨未蒙減柴者 亦豈無向隅之嘆哉 萬戶隨卒一百六十名 所納燒木一體永減 本米六石六升 以營平役庫 秋夏分半 上下該鎮是齊

一 營本府及萬戶所 蕩減柴鷄眞荏等三種 本米或從詳定 或憑市直分數磨鍊 則合小米爲三百二十七石十四斗八升八合是置 皆以營平役庫 依節目出給是矣 戶長所柴價米 則不可以眞荏戶鷄等 些少減給 論旣先例用 則不無闊狹 故依承發所米除例 夏秋分半 具色落 戶長任意捧用 而畢竟以捧上成冊 移送平役 以爲施納之意 永爲定式 依此施行是齊

一 此土本以眞荏稀產之地 而私貿極難云 故一從齊議 眞荏每石價小米二石式 折定是齊

一 二徒健入別刀朝天金寧等五里 大同眞荏與戶鷄 此是本府所納者 而自營門今爲蕩減 則其代以本米 固當劃下 而本府旣是營下支持邑 故費用甚多 出給本米 私貿民間之際 不無生弊之端 故戶鷄與眞荏 以營門所納 各洞里比數 劃報於本府是遣 本米則營門監營與戶庫子處 出給是齊

一 一鷄三卵價錢 詳定爲一匁五分 故以小米八升折定 則合爲十三石一斗八升是置 營門監營 秋夏分半 次知受出於營平役庫是齊

一 眞荏價 本米合十四石九斗八合 營門戶庫子 秋夏分半 次知受出於營平役庫是齊

柴鷄及眞荏價定式

燒木元捧 五千五百十丹 [每丹八升式 二升色庫例用除 實六升]

合價米 二百九十三石十三斗內/ 七十三石七斗 [每丹價米 二升式除
出 戶長及庫子例用除]/ 實 二百二十石六斗內/ 八十六石六斗 本官割
給木 二千一百六十丹價/ 二石六斗 該監例用木 六十丹價/ 一百三十
一石九斗 營門排用木 三千二百九十丹價

戶長及庫子例用米 七十三石七斗內/ 十三石七斗 庫子例下/ 六十石
戶長例下/ 二十八石十二斗 本府條/ 四十四石十斗營門條

眞荏減給 合七石四斗五升四合 [每石價 小米二石式]/ 價小米 十四
石九斗八合內/ 八石九斗八升 本府條/ 五石十四斗二升八合 營門條

戶鷄 二百四十六首/ 卵 七百三十八箇/ 一首并卵三介價米八升式/
價小米 十三石一斗八升 本府條/ 合價米 三百二十一石八斗八升八合/
加 六石六斗 萬戶所燒木 一百六十丹價 [每丹 六升式]

郡合價米 三百二十七石十四斗八升八合內/ 一百三十六石十四斗六
升 本府條/ 一百八十四石九斗二升八合 營門條/ 六石六斗 萬戶所條

各洞所納炭草及減給眞荏戶鷄區別秩

下道 上道 細花 坪代 槐伊 魚登 無注 北浦 咸德 新村 臥屹 道連
細刷 奉蓋 所屹 下無 上無 別羅/ 右等十八里 永減燒木 只捧青草

松堂 善屹 臥山 大屹/ 右等四里 永減燒木 只捧炭次

金寧一里/ 永減戶鷄 只捧燒木

朝天 別刀 健入 一徒 二徒 三徒/ 右等六里 永減眞荏 只捧青草

大獨 我羅 道路 吾等 吾羅 道頭 井實 蓮洞 老衡 內都 外都 都坪
伊生/ 右等十三里 永減燒木 只捧青草

下貴 上貴 光令 長田 水山 舊嚴 中嚴 高內 涯月 下加 上加 納邑
於道 郭支 毛瑟 歸德 立石 上大 潛水 孝洞 晚早 明月 獨浦 俠才 孟令
板浦 頭毛/ 右等二十七里 永減燒木 只捧青草

召吉 今德 於音 今岳 造水 楮旨 清水/ 右等七里 永減燒木 只捧炭次
已上七十六洞里

2. <大靜旌義各浦水稅蠶革罷節目>

夫稅者 有關市之征 見畿麥之減 自古然矣 而今於本島之有水稅名色 不知册自於何年也 此土女工 素味紡績 山女織竹 猶未圖生 舉皆懸鵝 浦娥採藿 終鮮契活 無非涸魚 而此中最可矜者浦女也 寄命一匏 裸身投海 水國咫尺之間 浮沈游泳 非鮫非鵝 而如當藿荒 終日采采 不盈傾筐 而浦有司 稱以官供 隨採盡攫 則女畏毒拳 不敢高聲而語 赤身灘上頓足而立 白手浦邊扣胸而歸 此何景色 且又納藿之時 色庫輦低昂 稱鍾 一斤所納 幾近三四斤 一束所捧 洽爲二三束 而此猶不足 朱牌迅火 夫受楸楊 妻困杖箠 切骨難支之瘼 足可以干和 故甲戌 繡衣之統三邑而半減 乙亥 本營之州各浦 而永革者 皆出於惻隱之地 而惟獨旌大諸浦 未蒙一視 何舍之歎 切矜於衆咻 害澁之嫌 偏及於獨樂 其所矯揉之方 夙宵不弛之中 所謂頭毛里 在濟州之西大靜之北 男役於州 女稅於縣 而向自本縣設置本木 先從頭毛 而稱曰蠶稅之說 自然入聞 余以謂官得職任 民受其惠矣 追後更探 則斂出二十三木於至貧之民戶 防此蠶稅云 瞻聆攸及 非但該歎 可謂出爾反爾 而朝三暮四 則既聞之後 豈可掩過而仍置哉 斂木之縣捧者 盡數還給於該洞後 大靜之十洞 旌義之二十五洞浦稅 自營門從長區劃 一併革罷是在果 大抵弊者有源 而如水添濕 故絕其添 不如塞源 故防此弊 不如設本 故先考營賑穀簿 則有別儲耗 代場稅米六十石 劃給旌義者 而近年以來 換作皮穀 折半上下 其外剩餘 自歸營用 此實不正之甚者也 又考大靜縣大同庫會案 則有反利木二十六疋 而取其利條 前用於縣貢之格價也 貢格今已革罷

則利條之歲加年增 無幾夥數 勢所必至 而且本利尤浮於水稅 畢竟山沿之受害 如在目擊 亦不可不念 弊一言 自今爲始 耗代米必以場稅精米 分排區處爲乎矣 二十三石十斗 換作皮穀六十石 依前旌司倉元 例下是遺 二十四石十斗 旌義稅藪代錢 七十四兩價上下是遺 十一石十斗 大靜稅藪代錢 三十五兩價上下 而不足錢十五兩段 以該縣大同庫利條木 七疋三十二尺 年年並下於官廳 則於官於民 是豈非一舉兩全哉 成節目三十八件 臚列于左 一件營上 其餘三十七件 分送於兩縣及各浦里 依此遵施 庶有萬一支保之道 云爾

庚子八月 日

行使(押)

後

一. 大靜·旌義海村各里 及頭毛里水稅藪 永爲革罷是齊

一. 大靜元捧藪一百二十五束 旌義元捧藪一百八十五束 合藪三百十束 而每束價錢四錢式 合錢一百二十四兩內 十五兩 以大靜大同木利條七疋三十二尺 年年上下 一百九兩 以場稅米三十六石五斗 分排上下是齊

一. 場稅米中 本州旌義司倉別儲耗代 年年例下 三百十三石五斗內 二百五十三石五斗 戊戌李等換作元上下 及民間甲耗防納 與補庫移上條 年年分排區處除 實在旌義司倉例下精米六十石內 二十三石十斗 換作皮穀六十石 依前司倉上下是遺 二十四石十斗旌義稅藪代錢七十四兩價上下是遺 十一石十斗大靜稅藪代錢三十五兩價上下是齊

一. 穀物之排用 異於藪束 色庫輩易爲犯用 貿易時 葛藤之患難保其必無右藪代米 今秋爲始 付之由吏 自官上下 勿委該色之手是齊

一. 場稅精米三十六石五斗 以稅藪代 年年分配 上下於兩縣之際 年久後 或有生弊之慮 一從該縣次知色吏所願 大靜之七八兩場 旌義之

九十兩場 營納稅米中 有直捧者除 色落移施是齊

一. 大靜大同庫流來木二十疋 己亥利條 添本木六疋 合二十六疋 庚子利條爲始 七疋三十二尺式 年年上下於本縣稅釐代是齊

二. 場稅精米價錢 每石三兩式 以元詳定上下 則與營牧水稅代錢上下 懸有厚矣 年久之後 色吏輩托以陸貿易 詳定價之不齊 或有復侵於民間之弊 則當該首吏 鄉之陪現刑配 斷不饒貸是齊

一. 本州日菴 及兩邑水稅 今已革罷 而大靜浦稅十七束之仍斂民間 未免斑駁是如乎 高濟弘新起畚 屬公條 羔屯員 水種六斗付 今秋爲始 自官收稅排用 浦菴名色 永爲革罷是齊

Ⅲ. 자료의 분석

1. 《감시절목》

이 절목은 前言, 節目, 附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전언의 서두에는 沈英錫 兼防禦使가 濟州營에 부임한 뒤 살펴본 18세기 전반기 제주 백성들의 사정이 서술되어 있다. 심영석의 눈에 비친 문제점은 烟役과 防納, 大同의 폐단에 관한 것이었다.

㉔ 먼저 백성들이 가장 괴로워했다는 烟役에 대해서 살펴보자. 제주 영에 부임한 뒤에 백성들의 사정을 살펴보니, 제주는 토지가 척박하고 백성들의 생활이 가난하였다. 또 백성들에게 무거운 부담이 되는 것은 烟役이었다. 男丁 한 사람이 원래의 身役 외에 靑草와 燒木의 두 가지 役을 해마다 겸하여 책임지는 것이었다. 靑草는 마소의 먹이인 풀(속칭 생출)이고, 燒木은 柴木 즉, 땔나무이다. 이것은 陸地 고을에는 없는 폐단이라고 하였다.

즉, 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소와 말의 사료나 땀감도 모두 民戶에게 요역으로 부과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당시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다만 원래의 신역 외에 청초와 소목 두 가지를 모두 남정 한 사람에게 부과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무거웠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사정들은 심영석 복사가 부임하기 이전에는 어떠하였는지, 제주지방의 邑誌類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18세기에 이루어진 《濟州邑誌》(정조 10년~13년: 1786~1789)와 《濟州大靜靜義邑誌》(정조 17년, 1793) 등에는 백성들이 바치는 草[풀]·柴[땀나무]·炭[숯]·雉[꿩]·鷄[닭] 등의 물종이 俸廩과 徭役 항목에 실려 있다. 즉, 전자의 제주목 봉름조 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남정 1인당 풀은 1法,²⁾ 땀나무는 1丹을 받았다고 하였다. 후자의 제주목 요역조에는 풀 1法을 20束으로, 땀나무 1丹을 1束으로 기록하였다. 산촌에 사는 남정들에게는 풀 1法 대신에 炭[숯] 5말을 받았다. 특히 糶·牧에서 이들 물종을 나누어 받았다가 복명 사신의 접대비와 영·목의 일용의 경비로 지급하였고, 또 진상할 우마의 먹이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耽羅誌草本》 제주목 봉름조에는 순조 26년(1826)에 沈英錫 목사가 요역이 번거롭고 과중하다 하여 땀나무는 각 丹의 값으로 小米[좁쌀] 6되씩을 本錢으로 지급하여 사 쓰게 하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본 《감시절목》의 前言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內地 營邑의 예에 따라

2) 光緒 7년 즉, 고종 18년(1881) 8월에 康在互 대정현감이 대정현 관내에 발급했던 《田結柴草揀弊節目》의 前言에는 “所謂法鐵 絕其三環 僅存一把 柴草價未定規式”이라 하여, “이런나 法鐵은 고리 3개뿐 남고 한 발만을 남겨서 柴草價의 규정으로 정하였다.” 하였고, 節目에서는 “柴草所捧法鐵 環數爲十六箇 而或長或短 不無操縱濫捧之弊 故改以平一把十三環減定 更無撓改之弊”라 하여, 柴草를 받는 法鐵의 고리 수는 16개인데, 혹은 길고 혹은 짧아서 濫捧을 조종하는 폐단이 되었으므로 평균 한 발을 13고리로 고쳐서 줄여 정하여 撓改의 폐를 없앴다.”고 하였다. 法은 나뭇단이나 풀단 따위를 세는 단위였다.

官에서 사용하는 燒木은 本米 즉, 本錢이 되는 쌀을 만들어 두고 해당 衙前들에게 내 주어서 사 쓰게 하고, 그 대신 백성이 납부하는 燒木은 모두 총수에 따라 탕감하여 民弊를 제거한다고 하였다. 더욱이 燒木은 당해년(순조 26년) 가을에 새로 밭이들이는 것부터 납부하지 말라는 뜻으로 절목을 만들어 둔다는 것이다.

그러나 靑草의 경우는 진상하는 말과 소를 먹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으나 변통하기가 어려워서 예전대로 그대로 둔다고 하다가, 순조 27년(1827) 정월 11일자로 沈英錫 목사는 다시 제주목 관내 각 마을에 傳令하여, 草田(속칭 출앗)이 없어서 燒木으로 대신 바치기를 원할 경우에는 그 액수의 반을 대납할 수 있도록 하였다.³⁾ 다음의 인용문이 바로 본 《감시절목》에 첨부된 傳令 내용을 풀이한 것이다.

“떨나무를 감면하는 것과 같음은 백성들의 부역을 대신하는 데서 나온 것이니, 청초 대신에 소목을 바치는 것은 서로 대신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절목을 成出할 때 곡절을 분석하지 못한 가운데 당해 아전이 청초 대신에 소목 1단을 받은 외로 半 丹을 더 받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해당 아전을 우선 治罪하거니와 가난한 백성 중에 과여 草田이 없어서 燒木으로 대신 바치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1겹 대신에 소목 1단을 서로 대신하여 바치게 하되, 전 수량을 소목으로 바치지 말고 반드시 반으로 나누어서 청초를 바치게 하고, 이 전령은 절목의 말단에 첨부하여 영구히 준행해야 할 것이다.”

3) 傳令 道頭里 當如減柴 出於防民役 則草代納木 似是相代 故節目成出時 不爲分析 委折中 該吏草代捧木一丹之外 加捧半丹云 故該吏爲先治罪是在果 貧民中 果無草田 而如有代木願納者 則一迭代木一丹 相代以納爲乎矣 勿以全數納木 必以分半納草是遺 此傳令付之節目末端 以爲永久遵行之地者 丁亥正月十一日 使(押).

그러나 1徒·2徒·3徒 등 邑三里와 健入·別刀·朝天 등 여섯 마을은 이미 燒木을 감하였고, 金峯 한 마을도 靑草를 감했었다. 이렇듯 이미 감면된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燒木을 탕감하는 일을 제주목 관내 전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시킬 수도 없고, 또 감면의 기회를 얻지 못한 마을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 사정에 맞추어서 공평하게 조정한다고 하였다. 그 내용이 본 《감시절목》 말미에 첨부된 '각 동리에서 바치는 炭·草·眞荏 및 戶鷄의 區別秩'이다. 마을 별로 감면해 준 내용을 일률적으로 정리해 놓았다.

① 하도·상도·세화·평대·괴이(한동)·어등(행원)·무주(월정)·북포(북촌)·함덕·신촌·도련·세쇄(회천)·봉개·소홀(삼양)·하무(영평2동)·상무(영평1동)·별라(간월동)·와홀 등 18리는 영구히 땄감을 감하고 청초만 바친다.

② 송당·선홀·와산·대홀 등 4리는 영구히 땄감을 감하고 탄[숯]만 바친다.

③ 김녕은 영구히 호계를 감하고 땄감만 바친다.

④ 조천·별도·건입·일도·이도·삼도 등 6리는 영구히 참깨를 감하고 청초만 바친다.

⑤ 오라·오등·도두·대독(漢嶺)·아라·도로(연동일부)·정실·연동·노형·내도·외도·도평·이생(해안)·하귀·상귀·광령·장전·수산·구업·중업·고내·애월·하가·상가·납읍·어도·곽지·모술(금성)·귀터·입석(대립)·상대·잠수(수원)·효동(고립동)·만조(상명)·명월·독포(웅포)·협재·배령(금능)·판포·두모 등 40리는 영구히 땄감을 감하고 청초만 바친다.

⑥ 소길·금덕·어음·금악·조수·저지·청수 등 7리는 영구히 땄감

을 감하고 탄만 바친다.

그런데 《耽羅事例》·《耽羅營事例》 등에 의하면, 청초의 경우 순조 31년(1834)에 韓應浩 목사가 朝天과 別刀, 현종 원년(1835)에 朴長復 목사가 下道, 현종 3년(1837)에 趙禹鉉 목사가 明月의 靑草를 각각 탕감하는 대신에 각 丹의 값을 소미 8말 2되로 쳐서 色庫(담당 구실아치)가 전례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했다.

㉔ 두 번째로 방납에 대해 살펴보자. 城 밖에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에서는 防納이라 칭하며 포목과 곡물을 징수하는데, 반드시 정해진 액수를 갑절로 받은 뒤에야 그만 둔다고 하였다. 방납은 납세 의무자가 직접 납입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공물을 代納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防納人이 대신 납부하는 공물의 값을 해당 민호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이러한 사정이 절목을 만들어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동기가 되었다.

㉕ 세 번째로 大同에 대해서 살펴보자. 邑三리와 健入 등 네 마을은 城과 官衙의 보수에 동원되는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미 燒木과 鷄가 면제되어 있었고, 大同으로 바치는 眞荏도 특별히 탕감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또 별도·조천 두 마을은 貢船이 출입하는 제주의 관문이었기 때문에 이미 백성들을 침해하는 일이 많았다. 예를 들면, 새 관원을 맞이하고 구 관원을 보낼 때에 소용되는 饌鷄도 역시 이 지역 민가에 책임을 지웠기 때문에 戶鷄를 감하여 준다는 것이 결국은 빈 말이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읍삼리와 함께 영원히 참깨를 감한다고 하였고, 金寧 한 마을의 경우도 집집마다 바치는 닭과 달걀은 특별히 감면해 주었다.

여기서 다시 18세기에 이루어진 《濟州邑誌》의 大同條를 살펴보면, 大同米라 하여 男丁 1인당 매년 田米[좁쌀] 5되씩을 받았다. 육지와 같이 토지의 결수가 아닌 인정(人丁) 즉, 장정들에게 부과되었던 것이다.

또 재해가 있는 해에는 1되를 감해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매년 남정의 수에 따라 대동미를 받아서 갖가지 進上價로 各房에 지급하였고, 대정현은 남정 1명당 전미 5되를 받아서 각종 진상가와 官用의 油價로 지급하였다. 정의현은 남정 1인당 전미 5되씩을 받아서 사용하였으나 농사의 작황이 흉년에 가까우면 1되를 감하여 4되씩 받아서 진상가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보면 18세기 말까지 제주 세 고을의 대동미의 용도는 주로 進上價와 관용의 유가를 지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대동세의 항목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리 적용되었다.

18세기 말에 이루어진 《濟州大靜旌義邑誌》에 따르면, 제주 세 고을이 똑같이 남정 1인에게 매년 5되씩 받는 대동미의 수량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 5되 중에서 전미는 3되만을 받고 나머지 2되 분량은 다른 작물로 대체되었다. 즉, 眞荏[참깨] 8홉, 菘豆 3홉 4작, 眞麥[참밀] 1되씩을 받는 것으로 명목이 바뀌어진 것이다.⁴⁾ 제주목에서는 목사와 판관, 대정과 정의 양현에서는 현감이 이를 받아서 일용에 대비하였다. 받는 수량은 남정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었다. 뒤에 전미는 해마다 정례적으로 1되씩을 줄여서 받았다. 《耽羅誌草本》에 이르러서는 닭도 戶役으로 女獨戶를 제외하고 각 호마다 닭 한 마리와 계란 3개를 받았는데, 산촌에 사는 백성들은 닭 대신에 꿩으로 바쳤다고 하였다.

그러나 《耽羅事例》에 따르면, 제주목의 경우 예전의 州中面과 新·舊右面의 49里⁵⁾에서는 남정 1인당 대동세로 小米 2되, 眞麥 1되,

4) 제주목 大同錄에는 ‘大同米[本無結役所收 以男子所納 謂之大同米 每男子每年五升 內田米三升 眞荏八合 菘豆三合四勺 眞麥一升式...]’이라 하였다.

5) 당시 제주목은 左面(新村面·朝天館面·金寧面·別防面)·中面(中左面·州中面·中右面)·新右面(費日面·嚴莊面·涯月面)·舊右面(明月面·板乙浦面) 등 大面(行政面, 4개)과 小面(儒面, 12개)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그 중 州中面은 一徒·二徒·三徒와 健人浦里·大獨浦里·道路里·吾等里·我羅好里·吾羅好里

小豆 3홉 4작, 菘豆 3홉 4작, 眞荏 8홉, 水荏 1되 2홉씩을 받아서 12달 몫으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었다. 小豆와 水荏이 추가되고 있다. 더욱이 《備邊司臚錄》 순조 원년(1801) 11월 7일시에는 鄭觀輝 복사가 남정에 부과하는 대동미는 本島 밖에 없는 役이므로 다른 예를 따라 굶어 모아 대신 지급해 주도록 조정에 요청하여 허락을 받기도 하였다.⁶⁾

또한 대동세는 19세기로 넘어가면서 그 명목뿐만 아니라 부과되는 종류와 양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탐라사례》에 의하면, 바로 이 해(순조 원년, 辛酉)에 小米·眞麥·小豆·菘豆 등을 혁파하는 대신에 眞荏과 水荏은 전과 같이 그대로 두고, 참깨는 해촌의 남정에게, 들깨는 산촌의 남정에게서 거두도록 하였다. 그 결과 19세기 중반(헌종 7년, 1841)에 이루어진 《耽羅誌草本》에는 그 稅目이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촌에서는 장정 1인당 참깨 8홉을 받았고, 산촌에서는 장정 1인당 들깨 1되를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山·沿村을 막론하고 장정 1인당 菜種[유채씨] 1되를 받고 기름을 짜서 관에서 사용하였다. 대정과 정의에서는 장정 1인당 참깨 1되를 거두었다.⁷⁾

《탐라영사례》에 의하면, 生鷄는 中面과 新·舊右面 41리에서 매년 정월을 위시하여 매 호에 각각 1마리를 받아서 12달 몫으로 나눈 것이 185마리이다. 이것은 戶마다 받는 것이므로 해마다 각각 달랐다. 닭 1마리는 돈으로 치면 1전 2푼이다. 生雉는 사용할 곳이 있을 때에 닭 1마리와 계란 3개로 대신 값았다. 鷄卵은 3면 41리에서 매년 정월을 위시하여 매 호에 각각 3개를 받아서 12달로 몫을 나눈 것이 매 달 555개인데 해

·巨路里 등 10리였다.

6) '男丁大同米 每口例捧五升 以資營邑排朔 而獨於本島 有此科外之役者 實所矜憐 今年爲始 從他拮据 永爲防給事也'

7) 양진석, <18, 19세기 제주의 收取制度和 特徵> 《耽羅文化》 24, 2004, pp.101-130.

마다 달랐다. 닭 1마리 대신에 바치는 계란은 15개였다.

다음으로 시행세칙을 살펴보자. 시행 세칙은 前言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을 11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여기서는 나열에 그친다.

① 제주목의 4面 76洞里에 탕감해 준 燒木은 합계 5,510 丹이다. 이것은 원래 營門(濟州營)과 本府(濟州牧)에서 나누어 쓰던 물건이다. 그러므로 제주영의 平役庫에 本米(본전이 되는 쌀)를 마련해 두었다가 관에서 쓰는 燒木은 담당 戶長이 本米를 가지고 사서 사용하고, 남은 것은 詳定例에 따라 돈으로 환산하여 바칠 것. 詳定은 나라의 제도 또는 관아에서 쓰는 물건의 값, 세금의 액수, 공물의 액수 등을 심사 결정하여 오랜 동안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燒木은 매 丹에 돈으로 환산하여 詳定하면 1錢 2分이고, 그 값으로 치러주는 쌀로 논하면 6되이다. 燒木을 받을 때 戶長과 庫子가 혜택을 받는 이로우미 있었으나 지금은 燒木을 감하고 사 쓰게 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노고를 더하여도 지탱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燒木 각 丹의 값을 좁쌀 8되로 수량을 넉넉하게 환산하여, 6되는 元價에 포함시키고 2되는 戶長에게 지급하되, 그 전례에 따라 사용하는 액수의 多寡를 참작하여 庫子와 나누어 쓸 것.

③ 營門과 本府 등 관에서 사용하는 燒木은 호장이 맡아서 사 바치고, 각 처에 전례에 따라 내려 주는 소목은 모두 本米로 지급하되, 燒木은 매 斗에 좁쌀 6되씩 호장이 맡아서 지급할 것.

④ 燒木 각 丹의 값을 本米로 치면 8되이다. 그 중에서 2되를 덜어 내어 호장과 고자가 전례에 따라 사용하게 하되, 그 수량을 모두 합하면 73섬 7말이다. 이 중 13섬 7되는 고자에게 지급하고, 60 섬은 호장에게 넘

겨서 혜택을 입는 밀천으로 삼게 할 것.

⑤ 당해 감독관이 전례에 따라 사용하는 燒木은 1년을 통틀어 60단이 되는데, 그 값을 좁쌀로 치면 2섬 6말이다. 이를 달 수로 배정하고 여름과 가을로 반씩 나누어서 가져다 쓸 것.

⑥ 萬戶所에서 사용하는 靑草와 燒木은 당해 鎭의 防卒들에게 받아서 사용하였는데, 유독 소목을 탕감하는 혜택을 입지 못한 자는 좋은 때를 만나지 못한 한탄이 있을 것이므로 萬戶의 所率 160명이 바치는 소목 일체를 영원히 탕감하고, 本米 6섬 6말을 糶의 平役庫에서 여름과 가을로 반씩 나누어서 해당 鎭에 지급할 것.

⑦ 麓門과 本府 및 萬戶所에서 탕감한 鰲甘[柴]·닭[鷄]·참깨[眞荏] 등 세 종류의 本米를 詳定한 例에 따라 혹은 市場의 가격에 맞추어서 수량을 나누어 마련하고 합하면 327섬 14말 8되 8홉이다. 모두 麓門의 平役庫에서 절목에 따라 내어 주게 할 것. 戶長所의 鰲나무 값으로 치러 주는 쌀은 眞荏·戶鷄[집집마다 바치는 닭] 등으로 사소하게 감해 줄 수가 없다. 그러므로 承發所(문서 受發所)의 쌀로 전례에 따라 사용할 것을 제하고 여름과 가을로 반씩 나누어서 色落米(看色米와 落庭米)를 갖추어 호장이 임의로 받아쓰되, 필경은 받아서 장부를 작성하고 평역고에 移送하여 施納하도록 영원히 규정을 정하는 것이니, 이에 따라 시행할 것.

⑧ 제주 지역은 본래 참깨가 거의 생산되지 않는 곳이므로 사사로이 구입하기가 아주 어렵다. 그러므로 한결같이 일제히 논의한 바에 따라 眞荏은 각 섬의 가격을 좁쌀 2섬씩으로 환산할 것.

⑨ 二徒·健入·別刀·朝天·金寧 등 다섯 마을에서 大同으로 바치는 것은 眞荏과 戶鷄이다. 이것은 本府에 바치는 것이다. 그러나 麓門에서 지금은 이것을 탕감하고 그 대신 本米로 합당하게 떼어 주었다. 本

府는 이미 糶下의 支待邑(사신을 접대하는 고을)이므로 책임져 사용할 것이 아주 많아서 本米를 내 주어 사사로이 민간으로부터 사들일 때, 폐단이 생길 실마리가 없지 않다. 그러므로 戶鷄와 眞荏은 糶門에 바치는 각 洞里와 수량을 비교하고 확정하여 本府에 보고하면, 本米는 糶門의 監嘗[주방장]과 戶長·庫子에게 내어 줄 것.

⑩ 닭 1마리와 계란 3개의 값을 詳定하면 1錢 5分이고, 좁쌀 8되로 환산하여 합하면 13섬 1말 8되이다. 糶門의 監嘗이 여름과 가을로 반씩 나누어 맡아서 糶의 評역고에서 받아 낼 것.

⑪ 眞荏의 값을 本米로 쳐서 합하면 14섬 9말 8홉이다. 糶門의 戶長과 庫子が 여름과 가을로 반씩 나누어 맡아서 糶의 評역고에서 받아 낼 것.

* 臈감·닭 및 참깨 등의 값을 규정함

臈감의 元捧 5,510단[매 단에 좁쌀로 치면 8되씩인데, 2되를 色庫의 例用으로 제하면 실재는 6되이다.]을 합계하여 그 값으로 치러 주는 쌀로 환산하면 293섬 13말이다. 그 가운데 73섬 7말을 매 단에 그 값으로 치러 주는 쌀로 쳐서 2되씩을 매이 내어 호장과 고자의 例用으로 제하면 실재는 220섬 6말이다. 그 가운데 86섬 6말은 본관이 획득하는 臈나무 2,160단의 값이고, 2섬 6말은 당해 監官이 전례에 따라 사용하는 臈감 60단 값이며, 131섬 9말은 糶門이 나누어 사용하는 臈감 3,290단 값이다.

戶長과 庫子の 例用米 73섬 7말 가운데, 13섬 7말은 고자에게 내려주는 것이고, 60섬은 호장의 내려주는 것인데, 28섬 12말은 本府條이고 44섬 10두는 糶門條이다.

眞荏을 감해 준 합계 7섬 4말 5되 4홉[石當 값은 좁쌀 2석씩]은 그 값

으로 치러 주는 좁쌀로 환산하면 14섬 9말 8흡인데, 그 가운데 8섬 9말 8되는 본부조이고 5섬 14말 2되 8흡은 영문조이다.

戶鶴 246마리, 달걀 738개[달 한 마리와 달걀 3개의 값으로 치러 주는 쌀은 8되임]의 값으로 치러 주는 좁쌀 13섬 1말 8되는 본부조이다.

합계하여 값으로 치러 주는 쌀 321섬 8말 8되 8흡에 더한 6섬 6말은 만호소의 땀값 160단의 값이다[매 단에 6되씩]. 都合하여 값으로 치러 주는 쌀 327섬 14말 8되 8흡 가운데, 136섬 14말 6되는 본부조이고, 184섬 9말 2되 8흡은 영문조이며, 6섬 6말은 만호조이다.

2. 《대정·정의 각포 수세곽혁과 절목》

이 절목은 전언과 절목으로만 구성되었다. 전언에서는 먼저 18세기 중반의 ㉠ 제주 浦女(潛女)의 비참한 생활상과 ㉡ 이들에 대한 有司·色庫輩의 횡포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서두에서는 예전의 租稅 항목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대체로 稅는 關門(통과세)과 저자(영업세)에서는 거두고⁸⁾ 畿麥(田野)에서는 감하는 것으로, 옛날부터 그러하였다. 지금 本島에는 水稅의 명목이 있는데, 어느 해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 이 땅의 女工은 본디 紡績에 어두웠다. 山女는 涼竹(涼太)를 짜도 오히려 圖生하지 못하여 거의 모두가 헤진 옷이고, 浦娥는 미역을 채취하여도 끝내 삶을 영위하기가 힘들어서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 중에서 가장 불쌍한 것은 浦女이다. 帛[匏] 하나에 목숨을 맡기고 알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水國의 咫尺之間을 뗏다 잠겼다(자맥질)하며

8) 關市之征을 풀이한 것이다. 이는 《周禮》天官 大宰의 9賦 중에 일곱 번째에 수록된 關市의 賦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關은 국경 및 기타의 요소에 설치된 관문이며, 市는 市廛으로 都邑 속에 설치되었다. 關은 商旅가 통과하는 곳이며, 市는 화물을 판매하는 장소이다.

해엄을 치는데, 상어도 아니고 오리도 아니다.

㉔ 미역이 흉작일 때에는 온종일 따고 또 따도 기운 광주리(속칭 망사리)를 채우지 못하는데, 浦口의 有司는 官供이라 칭하며 채취하는 대로 다 움켜쥐니, 浦女는 그 독한 주먹이 두려워서 감히 큰 소리 한마디 못하고, 알몸으로 발을 구르며 여울 위에 섰다가 빈손으로 가슴을 두드리며 浦邊으로 돌아가니, 이 무슨 꼴인가. 더욱이 미역을 바칠 때는 色庫輩가 저울추를 조작하므로 한 근을 바치면 거의 서너 근에 가깝고, 한 뭇[束]을 받으면 합하여 두세 뭇에 이른다. 이리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朱牌⁹⁾로 독촉하니, 지아비는 桁楊(죄인의 발목을 채우는 刑具)의 刑을 당하고 아내는 朱杖(杖槓 : 붉은 칠을 한 몽둥이로 치는 형벌)에 시달리어 원한이 뼈에 사무치고 지탱하기 어려운 폐막이 족히 和氣를 해칠 만하다.”

㉕에서는 工女를 山女와 浦娥(浦女 : 潛女)로 구분하여 그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언급하였다. ㉔에서는 官供이라 이르며 마구 착취하는 포구의 有司와 稅藪을 받는 色庫輩의 횡포, 그에 따라 가해지는 형벌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특히 具載龍 목사는 “水稅가 어느 해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수세곽에 대한 기록은 정조 15년(1791, 辛亥) 8월에 大靜縣에서 관내 마을에 발급한 《大靜縣釐正節目》에도 수록되어 있다.

“각 포구에서 바치는 水稅藪과 貿雜藪은 본디 斤(근)·兩(냥)의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빚이 오래되니 해이해져, 그것을 한부로 징수하는 폐단이 짐차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저 포구의 백성들은 어떻게 지탱하여

9) 朱牌는 곧 朱牒(朱帖)으로, 관아에서 죄인을 호출할 때 발부하는 통지서이다. 죄인의 성명을 쓴 朱杖(刑杖)을 함께 발부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牧民心藪》史典.

보전할 것이냐. 한결같이 法秤(저울)에 따라 개조하여 각 포구에 지급하므로 수세곽은 1束의 무게를 17근으로, 무잡곽은 1속의 무게를 7근 반씩으로 예전의 규례에 따라 규정을 마련하고 정밀하게 헤아려서 받을 것.”¹⁰⁾

위 인용문에서는 水稅藁과 貿雜藁은 근·냥의 규정이 있었으나 법이 오래되니 해이해져, 함부로 징수하는 폐단이 생겼다는 것과 수세곽 한 몫의 무게를 17근으로, 무잡곽 한 몫의 무게를 7근 반씩으로 정한 규정이 이미 시행되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특히 무잡곽에 대해서는 정조 18년(1798, 甲寅) 2월에 沈樂洙 어사가 발급한 <潛女貿藁雜藁革罷節目>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보인다.

一. 貿藁과 雜藁은 모두 7근 반으로 묶음을 만들어 거두어 받았으며, 묶음의 값은 무곽이 小米 6근 남짓이고, 잡곽이 皮穀 1말이므로 사서 취하는 것은 매 한 가지다. 혹 이것을 무곽이라 하고 또 잡곽이라 하는 것은 대개 牛毛와 靑角으로 대신 받았기 때문이다. 年事의 풍흉을 논할 것 없이 내 주어야 할 돈은 일정하게 반반의 값으로 지급하여 浦民에게 책임져 납부하게 하는 것은 白徵과 다름이 없다. 금후로는 本錢으로 환산한 價米를 해당 色庫에게 출급하여 時價에 따라 사서 취하게 하고 절대로 포민에게 거론하지 말 것.

一. 무곽의 본전 값을 色庫에게 내 주어서 사도록 정한 뒤, 그 물건이 陸産을 논할 것 없이 사서 바칠 때 만일 위협하여 지나치게 징수하면 색고의 무리는 지탱하여 감당할 수가 없는 형세에 반드시 이틀 것이다. 이것도 한결같이 陸地 쌀에 따라 시가를 매기되, 절대로 함부로 받지 말 것.¹¹⁾

10) 各浦所納水稅藁及貿雜藁 素有斤兩定式 而法久解弛 其所濫徵之弊 漸至莫測 唉 彼浦民何以支保乎 一從法秤改造 以給於各浦爲去乎 水稅藁則一束重十七斤 貿雜藁則一束重七斤半式 依舊例定式 精量捧上爲齊.

11) 一 貿藁雜藁 皆以七斤半 作束收捧 而束價貿藁 則小米爲六斤餘 雜藁則皮穀爲一斗是如乎 貿取一也 而或謂之貿藁 又謂之雜藁者 槩以牛毛靑角代捧之故 毋論 年事豐凶 給次一定半半之價 責徵於致支浦民者 無異白徵 今後則以本錢折價米

즉, 무곽·잡곽이라 한 것은 牛毛와 靑角으로 대신 받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였다. 한 묶음의 무게는 7근 반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다. 또 순조 때에 대정현감(순조 17년 6월~20년 4월)을 지낸 金仁澤의 《大靜縣衙中日記》에는,

“초8일 맑음. 포구의 백성 한 사람에게 곤장 5대를 쳤다. 당해 마을 里任이 稅藪으로 그의 가마를 빼앗은 것 같이 거짓 고소하였기 때문이다. 이른바 세곽이라는 것은 浦村 9개 마을에 사는 좀녀들에게 2束 5注之씩을 받아서 육지로 공물선에 실어 보내어 관청에 쓸 물건을 바꾸어 오는 것이다. 오후에 사창에서 곡식을 받았다.”¹²⁾

고 하여, 세곽을 받아서 육지로 공물선에 실어 보내어 관청에 쓸 물건을 바꾸어 온다고도 하였다. 이어 《備邊司牒錄》 순조 14년(1814) 5월 28일자 察理御史 李在秀의 別單 내용에는 “本島의 州邑에는 수세곽의 명색이 있는데, 이것은 각 포구의 潛女들에게 징수하는 것”이라고 전제 한 뒤, 계속하여 정조 18년(1798, 甲寅)의 <啓下節目>을 서두에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에 보고하였다.

“㉔ 제주와 旌義·大靜에서 받는 세금(미역)은 각각 그 수량을 정하고 17근을 한 저울로 하여 한 묵[束]의 미역을 받았는데, 세 고울이 같은 저울로 세금을 균등하게 하였다. 최근에 와서 세금을 징수할 때 17근의 저울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정한 액수 외에 더 받는 것만을 일삼았으며

出給該色庫 從時價買取 而切勿舉論於浦民是齊
· 買藪本錢價 出給色庫 貿易爲定之後 毋論其物陸産 買納之時 如威過徵 則色庫
輩之不堪支當 勢所必至 此亦一從陸地米 行時價 切勿濫捧是齊

12) ‘初八日快晴 浦民一人 打棍五度 以該里任稅藪 奪其釜鼎樣 誣訴罪 所謂稅藪者 浦村九里所居潛女等處 二束五注之式 捧稅載送貢物船 以爲官廳買用 午後行司倉 捧權’

로 浦女는 목 놓아 소리 내어 울며 청원해 한다. 지금부터는 本牧에서 받는 미역은 515속인데 258속으로 정하고, 本邑(貳衙)에서 받는 311속은 156속으로 정하고, 장이현에서 받는 370속은 185속으로 정하고, 내정에서 받는 250속은 125속으로 정하였다. 모두 그 세금을 반감하도록 이 미 공문을 보내어 申飭하였다.

㉔ 또 전에는 州邑에서 浦女들에게 小米를 지급하고 한 말에 미역 2백 냇을 받았는데, 이를 官貿糶이라 하였다. 이는 곧 강제 매입이며 잘못된 사례를 답습한 것이므로 갑인년의 절목에 합쳐서 모두 혁파하였다. 그 때 정의현 백성들은 마침 흉년을 당하여 자원하여 미역 값을 받았으므로 익년을 기다려서 혁파하기로 정하였다. 그 뒤 백성들은 혁파할 것을 원하였지만 官에서는 요구하는 대로 허락해 줄 수가 없으므로, 역시 절목에 의거하여 거행하도록 일체 공문을 보내어 신칙하였다. 浦女는 潛水의 일을 하는 바로 천하의 불쌍한 백성이다. 세 고을의 원래의 糶稅는 폐지할 수 있지만 어떻게 다시 한 냇을 더 징수하겠는가. 이번에 半을 감하고 나누어 정한 것이 과연 법칙에 들어맞으니, 그대로 法式으로 삼게 하고 값을 받는 한 구절에 이르러서는 역시 정조 18년의 절목에 의하여 지금부터 시행하도록 분부하십시오. “

이상의 내용 중 ㉔에서는 저울의 무게를 예전대로 17근으로 정한 것과 세 고을의 水稅를 모두 반으로 줄인 것을 들 수 있고, ㉕에서는 좁쌀을 지급하고 매입하는 貿雜糶이 사실은 강제 매입이므로 이를 혁파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순조 14년(1814)에는 찰리어사 이재수가 세 고을의 水稅를 통틀어 반으로 줄였고,¹³⁾ 순조 15년

13) 순조 14년(1814) 4월 8일(己巳)자에 제주 察理史 李在秀가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 올린 別單 중에, “세 고을의 미역세[糶稅]는 모두 총수를 감해 줄 것이며, 억지로 사는 것은 금지하도록 하십시오.”(三邑糶稅減總 而勒買則禁之) 하였다.

(1815, 乙亥)에는 許溟 목사가 濟州營 관내의 各浦에서 바치는 水稅과 日蠶을 어렵하고 묶어서 영구히 혁파하였는데,¹⁴⁾ 이것은 모두 측은 함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였다.

즉, 《耽羅事例》에 의하면, 水稅蠶은 515束인데 각 포구의 蠶녀에게 거두어서 매년 排用하였다. 乙亥에 許等이 그 偏苦를 민망히 여겨 水稅과 蠶을 영구히 혁파하고 月廩錢 889냥 5푼을 덜어내어 本錢을 만들고 監官과 色吏를 배정하고 10분의 2로 이자를 놓아서 水稅(潛稅蠶)를 대신하도록 절목(규정)을 만들었다. 日蠶은 63束인데, 乙亥에 許等이 일과를 반감하고 蠶를 덜어내어 本錢을 만들고 이를 水稅에 붙여서 본전 일체를 이자를 놓아 그 세를 대신하도록 절목을 만들었다. 본전(代錢)은 매 달 8푼 7리이고 水稅錢(蠶)은 매 달 9냥 8푼이다. 남아 있는 미역은 매 달 4속이었다.

그러나 유독 旌義와 大靜의 여러 포구만은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㉔ 여기서 구재룡 목사는 矯揉할 방도를 찾아 밤낮으로 고심을 하였다. “무엇을 버릴까 하는 한탄은 여러 사람이 떠들어대는 소리에 전전긍긍하게 될 것이고,¹⁵⁾ 어느 때에 씻을까 하는 혐의는 혼자서 즐기는 데에 치우치게 될 것¹⁶⁾이라는 《孟子》의 문구가 연상되었기 때문이었다. 전자는 개혁 분위기의 조성을 강조한 것이고 후자는 輿民同樂을 강

14) 《耽羅事例》에는 ‘水稅蠶 五百十五束 收稅於各浦潛女 每年排用矣 乙亥許等 閱其偏苦 永罷此蠶 除出月廩錢八百八十九兩五分 作爲本錢 定監色十二生殖 以代水稅之意 成置節目’ ‘日蠶 六十三束 乙亥許等 半減此蠶 除出月廩錢 作爲本錢 付之水稅蠶本錢 一體生殖 以代其稅之意 成置節目 而本錢每朔八分七厘 水稅錢 則每朔九兩八分式 餘在蠶則每朔四束式’이라 하였다. 許溟 목사는 順조 14년 (1814) 4월부터 肅宗 15년 5월까지 약 1년 1개월 동안 재직하였다.

15) 《孟子》 藤文公章(下 6).

16) 《孟子》 梁惠王章(上 2).

조한 문구이다. 더욱이 頭毛里는 제주의 서쪽이며 대정의 북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남자는 제주에서 부역을 하고 여자는 대정현에 세금을 바친다고 하였다. 즉, 두모리는 제주북과 대정현의 경계에 위치하여 그 소속이 애매했기 때문에 여자는 대정현에 미역세를 바친다는 의미이다.

㉞ 만일 본 大靜縣에 本木을 설치하고 먼저 頭毛里부터 세금을 감면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저절로 윗사람의 귀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또한 官에서는 職任을 얻는 것이고 백성은 그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하였다. 추후에 매우 가난한 民戶에게서 무명 23필을 염출하여 釐稅를 대신하였다는 사실을 탐지하고는 크게 한탄하였다. 이에 '너에게서 나간 것은 너에게로 돌아오는 것(出爾反爾)'¹⁷⁾이라 하여 上下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침에는 세 개, 저녁에는 네 개(朝三暮四)'¹⁸⁾라는 고사를 인용하여, 당장 눈앞에 보이는 차이만을 알고 결과가 똑같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 구재룡 목사는 이미 民戶에게서 거두어 모은 무명 23필 가운데 縣에서 받은 것은 모두 빠짐없이 해당 洞에 도로 돌려주게 한 뒤, 대정현 10洞, 정의현 25洞의 浦稅는 營門에서 충분히 구획하여 모두 혁파하였다.

㉟ 대체로 弊라는 것은 근원이 있는 것이어서 마치 물에 습기를 더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 더한 습기를 없애려면 폐단의 원천을 막는 것만 못하고, 그러한 폐단의 근원을 막으려면 本木을 설치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판단하여 그 개혁에 착수하였다. 本木을 설치하기 위한 방도로는 우선 세 가지 방도가 검토되었다.

㊱ 첫째, 營賑穀의 장부를 조사해 보았더니, 別儲耗 대신에 정의현에 떼어 주는 場稅米 60石이 있었다. 근년에 와서 皮穀으로 환산하여 절반

17) 《孟子》 梁惠王章(下 12).

18) 《莊子》 齊物論.

을 지급하고 나니, 그 밖의 나머지는 저질로 쯤의 용도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것은 실로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㉔ 둘째, 대정현 大同庫의 倉案(회계장부)을 조사해 보았더니, 反利木 26필이 있는데, 그 利條를 받아서 먼저 縣에서 상납하는 공물 값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공물 값이 이미 혁파되었으므로 利條가 해마다 증가하지만 많은 수를 바랄 수는 없는 형세에 반드시 이를 것이다.

㉕ 셋째, 本木의 利子는 水稅보다 더욱 넘쳐서 필경은 山村이나 沿海 마을이 피해를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므로 진념하지 않을 수가 없다.

㉖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금부터 耗穀 대신에 받는 쌀은 반드시 場稅精米 60섬으로 분배하여 처리하되, 그 중 23섬 10말은 皮穀 60섬으로 환산하여 전례에 따라 정의현 司倉의 元穀으로 전례에 따라 내어주고, 24섬 10말은 정의현의 稅糶 대신에 받는 돈 74냥 값으로 지급할 것이다. 또 11섬 10말은 대정현의 세곽 대신에 받는 돈 35냥 값으로 지급하되, 부족한 돈 15냥은 해당 縣의 大同庫의 利條木(이자로 받는 무명) 7필 32척에서 아울러 해마다 官廳에 내리면, 官이나 民에게는 이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시행세칙은 前言의 내용에 따라 8개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여기서도 그 내용을 나열하는데 그친다.

① 대정현과 정의현의 海村 各里와 頭毛里의 水稅糶을 영구히 혁파할 것.

② 대정현에서 원래 받아들이는 미역 元捧糶은 125束이고, 정의현에서 원래 받아들이는 미역 185속이다. 이를 합하면 310속인데, 각 束마다 그 값으로 치러주는 돈을 4냥씩으로 쳐서 합하면 124냥이다. 그 가운데서 15냥은 대정현 大同木의 利條 7필 32척으로 해마다 지급하고, 109냥

은 場稅米 36섬 5말로 분배하여 지급할 것.

③ 場稅米 중에서 濟州와 정의현 사창에서 별도로 저축한 耗穀 대신에 해마다 전례에 따라 내려주는 쌀은 313섬 5말이다. 그 가운데 253섬 5말은 현종 4년(1838, 戊戌)에 李源達 목사가 元穀을 환산하여 지급한 것과 민간의 甲耗[1/10]의 防納 및 補庫의 移上條로 해마다 분배하여 처리한 것이므로, 이를 제하면 실제 정의현의 사창에 전례에 따라 내려주는 精米는 60섬이다. 이 가운데 23섬 10말은 皮穀 60섬으로 환산하여 전례에 따라 사창에 지급하고, 24섬 10말은 정의현의 稅釐代錢 74냥 값으로 지급하며, 11섬 10말은 대정현의 세곽대전 35냥 값으로 지급할 것.

④ 곡물을 배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藿束과 달라서 色庫輦가 쉬이 써 버리고 사들일 때 갈등하는 근심을 보호하기가 어렵고, 그 반드시 위의 미역 대신에 바칠 쌀도 없으므로, 금년 가을을 시작으로 하여 由吏(吏房 아전)에게 붙여서 官에서 지급하되, 해당 구실아치의 손에는 맡기지 말 것.

⑤ 場稅精米 36섬 5말을 세곽 대신에 해마다 분배하여 兩縣에 지급할 때, 해가 오래 된 뒤에 혹 폐해를 낳을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한결같이 해당 縣의 담당 色吏(아전)가 원하는 바에 따라 대정현의 7·8 두 목장과 정의현의 9·10 두 목장은 糶에 바치는 稅米 중에서 바로 거두어들이는 것이 있으면 石色米와 落庭米를 제하고 다른 용도로 잠시 돌려 쓸 것.

⑥ 대정현의 大同庫에 전해 오는 무명 20필에 현종 5년(1839, 己亥)의 利條로 本木에 첨부한 6필을 합하면 26필이다. 庚子年(현종 6년)의 利條를 비롯하여 7필 32척씩을 해마다 本縣에서 세금으로 바치는 미역 대금으로 지급할 것.

⑦ 장세정미의 값으로 치러 주는 돈은 각 섬마다 3냥씩 원래 詳定한 대로 지급하면, 糶·牧의 水稅代錢으로 지급한 것과 서로 동떨어져 두

터움이 있다. 세월이 오래된 뒤에 色吏輩가 옥지에서 사들인다고 칭탁하며 詳定한 값이 가지런하지 않거나 혹은 민간에 다시 침탈하는 폐단이 있으면 해당 首吏는 고을에서 적발되는 대로 刑杖을 치고 유배 보내어 결단코 용서하지 말 것.

⑧ 濟州의 日糶과 兩邑의 水稅糶은 지금 이미 혁파하였고, 대정의 浦稅 17束은 여전히 민간에서 거두었으나 아직 편파적이고 공평하지 못하다는 개탄을 면하지 못하였다. 高濟弘의 新起田이며 屬公條인 羔屯員의 水種 6말 부치기는 금년 가을부터는 관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배정해 사용하여 浦糶(갯가에서 세금으로 징수하는 미역)의 명목을 영원히 혁파할 것.

IV. 마무리

〈減柴節目〉은 순조 26년(1826, 丙戌) 9월에 沈英錫 鏡방어사(순조 26년, 6월~27년, 8월 : 1826~1827)가 제주목 관내 각 리에서 납부하는 燒木·靑草·眞荏·戶鷄 등을 탕감하는 대신에 平役庫에 本錢을 마련해 두고 官에서 사용하는 소목 등을 사 쓰도록 하기 위해 발급한 것이다. 제주목 관내 4면 76동리에서 바치는 燒木 5,510단은 원래 嶺門과 本府에서 나누어 쓰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탕감하고 영문의 平役庫에 本米를 만려해 두고 관에서 사용하는 소목과 각 처에 전례에 따라 내려 주는 소목의 값을 지급하였다. 소목의 각 升의 가격을 돈으로 환산하면 1鎊 2分이고 小米로 작정하면 6말이다. 그러나 戶長과 庫子의 例用條를 확보하기 위해 2말을 더하여 합계 8말을 받았다. 이 외에 해당 監官의 예용조도 이를 여름과 가을로 반씩 나누어 받아쓰게 하였으며, 大

同으로 바치는 眞荏·戶鷄 등도 本米로 환산하여 戶長과 庫子 및 營門의 監嘗에게 내주도록 하였다.

靑草의 경우는 진상하는 牛馬를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변통하기가 어려웠다. 더욱이 沈英錫 목사는 순조 27년(1827) 정월 11일자로 다시 제주목 관내 각 마을에 슈을 내려, 草田이 없어서 소목으로 대신 바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 액수의 반을 대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이후 朝天과 別刀, 下道, 明月 등지의 靑草가 각각 탕감되면서 평역고의 소미를 나누어 지급하여 사 쓰게 하였다.

《大靜旌義各浦水稅蠲革罷節目》은 현종 6년(1840) 8월에 具載龍 겸방어사(현종 5년, 3월~동 6년, 10월 : 1839~1840)가 대정현과 정의현의 海村 각 리와 頭毛里의 水稅蠲을 혁파하기 위해 발급했던 것이다. 그 대안으로는 대정현 大同庫의 이자와 정의현의 場稅米를 本錢으로 삼아 해마다 나누어 지급하여 사 쓰도록 하였다. 이에 앞서 제주삼읍의 수세곽은 순조 24년(1824)에 李在秀 察理御史가 그 반을 감하였고, 그 다음해인 순조 25년에는 許溟 목사가 제주목의 수세곽과 日蠲을 혁파하였다. 수세곽은 각 포구의 浦女들에게 징수하는 것이고, 일곽은 日用蠲이라고도 하며 나날이 관청에서 사용하는 것이었다. 또 質蠲과 雜蠲이 있었는데 이것은 포녀들에게 小米를 지급하고 받아쓰는 것이었다. 강제 매입과 다름이 없었다. 무곽 혹은 잡곽이라 한 것은 牛毛와 靑角으로 대신 받았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 그리고 水稅의 기준이 되는 저울의 무게는 수세곽이 17근으로, 무잡곽이 7근 반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주제어

節目, 靑草, 燒木, 眞荏, 戶鷄, 水稅蠲, 日蠲, 官質蠲, 質雜蠲

Abstract

The Kinds of Jeolmok(節目類) of Jeju Area(濟州地方) in the
Later Joseon(朝鮮後期)

- Jeolmok which was reduced firewood(減柴節目) and abolished the tax of the
brown seaweeds in the ports of Jeongui and Daejeong
district(旌義大靜各浦水稅蠲革罷節目) -

Ko, Chang-seok*

Jeolmok(節目) is the detailed rules of certain regulation. There were some kinds of Jeolmok one was issu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he other was from local government, etc. There were two types of Jeolmok, the thing was issued from local government-the thing which corrected the abuse in the control area and the other thing which reduced the labor of the people. In these days, there are two kinds of Jeolmok which are handed down to Jeju area(濟州地方)-the things which were issued from the provincial governor(牧使) and from two county headmen(縣令)-Jeongui(旌義) and Daejeong(大靜). The contents of these types of Jeolmok consist of the preface and the detailed rules. There is only preface in Jeolmok, of course and there are some extras in it. But the quantity of them is not much. Two types of Jeolmok which was reduced firewood(減柴節目) and abolished the tax of the brown seaweeds in the ports of Jeongui and Daejeong district(旌義大靜各浦水稅蠲革罷節目) in this paper are not exception. So we will write square-hand(-write correctly) and go through the content of two materials(which I already suggested) simply.

*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Cheju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Jeolmok, Cheongcho, Somok, Jinim, Hogye, Susekwag, Ilkwag,
Kwanmukwag, Mujabkwag

교신: 고창석 제주시 제주대학로 66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E-Mail: pingpong0636@hanmail.net 전화: 064-754-2772)

최초 투고일 2006. 6. 11

최종 접수일 2006. 7. 2